

保健犯罪 단속에 관한 特措法 公布

=1969년 8월4일 공포=

요즈음 날트 증가해 가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의료업자의 단속을 위한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4일 공포되었다.

이 특조법은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의료업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서 부정의료업자의 단속조항인 제5조에서 조산원과 간호원이 삭제되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무면허자의 조산행위나 간호행위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보건에 미칠 위해가 지대함은 물론 우리 조산원과 간호원의 직권 옹호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이에 본협의회에서는 그간 두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7월8일, 7월21일)를 열고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관계요트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의료전문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특조법 5조를 정부원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8월 4일 그대로 공포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특조법 5조의 정부 원안은 의료법 제25조에 명시된 5개의료업자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조산원과 간호원만 삭제하여 국회에서 통과를 본 것이다.

본협의회에서는 국민보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고 우리들의 직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을 벌여 무면허자의 조산행위나 간호행위에서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을 보호토록 할 것

이다.

한편 8월 18일에는 서울시내 각 간호학교 책임자와 간호원장 그리고 보건소 간호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특조법에 대한 내용과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특조법의 벌칙이 강해졌으니 제5조의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의 벌칙”에 해당되지 않도록 간호업무 한계를 뚜렷이 할 것을 다짐했다.

즉 우리나라에는 아직 의료업무와 간호업무의 한계가 명시된 규정이 없고 또 손이 부족한 의사들을 도와 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점을 명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참고삼아 진정서와 성명서를 낸 곳을 소개하면 :

건의하는 공문 : 보사부, 의학협회

진정서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보사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성명서 : 보건신보 (8월 4일)

의협신보 (8월 4일)

후생일보 (8월 1일)